

군포도시공사 제8회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군포시장 승인을 받은 「군포도시공사 기간제 및 정년보장 전환관리자 관리규정」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 배재국



2025년 12월 29일

군포도시공사 규정 제 164 호

군포도시공사 기간제 및 정년보장 전환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

군포도시공사 기간제 및 정년보장 전환근로자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 제4항 제1조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1. <삭 제>
2. 임신기간이 15주 이내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경 영 기 획 실
입 안 자	직 위 성 명	경 영 기 획 실 장 곽 성 우
	직 위 성 명	인 사 총 무 팀 장 신 재 두
	담당자 성명 (전 화)	현 진 환 (3 9 0 - 7 6 4 1)

신·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2조(특별휴가)</p> <p>①~③ (생 략)</p> <p>④ 소속 부서의 장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여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·사산휴가를 주어야 하며, 해당 근로자는 유산·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, 유산·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·사산 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경영기획실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1. <u>임신기간 11주 이내</u> 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</p> <p>2. <u>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</u> 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</p>	<p>제32조(특별휴가)</p> <p>①~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</p> <p>-----</p> <p>1. <삭 제></p> <p>2. <u>임신기간이 15주 이내</u> :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
1. 근로기준법 시행령

제43조(유산·사산휴가의 청구 등) ① 법 제74조제2항 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<신설 2012. 6. 21.>

1.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·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
 2.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
 3.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·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
- ②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유산·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, 유산·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·사산 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 6. 21.>
- ③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·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·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. <개정 2012. 6. 21., 2025. 2. 18.>
1.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(이하 “임신기간”이라 한다)이 15주 이내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
 2. 삭제 <2025. 2. 18.>
 3.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
 4.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
 5.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